

기타유원시설업 신고사항 변경신고서

※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.

접수번호	접수일	발급일	처리기간	3일
신 고 인	성 명	생년월일(외국인등록번호)		
	주 소	전화번호		
영 업 소	대표자	생년월일(외국인등록번호)		
	소재지	전화번호		
	명칭(상호)	영업의 종류	신고번호	
변경내용	변경전			
	변경후			
	변경일자			

신고증 분실사유:

「관광진흥법」 제5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.

년 월 일

신고인

(서명 또는 인)

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·구청장 귀하

대장 및 공부확인	일 자	결 과	서 명
건축물대장등본/토지이용계획확인원			

신고인 제출서류	1. 신고증 1부 2. 영업소의 소재지 또는 영업장의 면적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3. 안전성검사 대상이 아닌 유기사설 또는 유기기구를 신설하는 경우에는 「관광진흥법 시행규칙」 제11조제2항제5호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서 및 제40조제5항에 따른 검사결과서 각 1부 4. 안전성검사 대상이 아닌 유기사설 또는 유기기구를 폐기하는 경우에는 그 폐기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5. 대표자 또는 상호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6. 「관광진흥법 시행규칙」 제12조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	수수료
		지방자치단체의 조례

유의사항

- 변경신고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.
 - 영업소의 소재지 변경
 - 안전성검사 대상이 아닌 유기사설 또는 유기기구의 신설·폐기 또는 영업장 면적의 변경
 - 상호 또는 대표자의 변경
 - 안전성 검사 대상은 아니나 정기 확인 검사가 필요한 유기사설 또는 유기기구의 3개월 이상의 운행정지 또는 그 운행의 재개
-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불이익처분을 받습니다.
 - 「관광진흥법 시행령」 제33조에 따른 행정처분(영업정지·영업장폐쇄명령 등)
- 신고증을 잃어버린 경우에는 분실 사유를 적고 신고증을 첨부하지 않습니다.

처리절차

